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급식지원 규정 신설 〉

■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09, 2213510,
2213511, 2213515, 2213517, 2213518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 개요	1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II . 검토의견: 국가보훈대상자 급식지원 규정 신설	9
※ 참고자료	25

I. 개요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7인
- 2) 제안일 : 2025. 10. 10.
- 3) 회부일 : 2025. 10.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5년 7월 기준 전체 독립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의 사회 발전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인정하고 경로효친(敬老孝親)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교통 편의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등 보편적 혜택으로 보답하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 국가가 반

드시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렇기에 일부 취약계층을 넘어 전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설).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7인
- 2) 제안일 : 2025. 10. 10.
- 3) 회부일 : 2025. 10.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5년 7월 기준 전체 5·18민주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직접적

으로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의 사회 발전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인정하고 경로효친(敬老孝親)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교통 편의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등 보편적 혜택으로 보답하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렇기에 일부 취약계층을 넘어 전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 신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7인
- 2) 제안일 : 2025. 10. 10.
- 3) 회부일 : 2025. 10.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5년 7월 기준 전체 국가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의 사회 발전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인정하고 경로효친(敬老孝親)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교통 편의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등 보편적 혜택으로 보답하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렇기에 일부 취약계층을 넘어 전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7인
- 2) 제안일 : 2025. 10. 10.
- 3) 회부일 : 2025. 10.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5년 7월 기준 전체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의 사회 발전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인정하고 경로효친(敬老孝親)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교통 편의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등 보편적 혜택으로 보답하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렇기에 일부 취약계층을 넘어 전체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신설).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8인
- 2) 제안일 : 2025. 10. 10.
- 3) 회부일 : 2025. 10.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5년 7월 기준 전체 참전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의 사회 발전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인정하고 경로효친(敬老孝親)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교통 편의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등 보편적 혜택으로 보답하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렇기에 일부 취약계층을 넘어 전체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6인
- 2) 제안일 : 2025. 10. 10.
- 3) 회부일 : 2025. 10.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5년 7월 기준 전체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의 사회 발전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인정하고 경로효친(敬老孝親)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교통 편의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등 보편적 혜택으로 보답하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렇기에 일부 취약계층을 넘어 전체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국가보훈대상자 급식지원 규정 신설

- 6건의 개정안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²⁾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며,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89조의4(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70조(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

	<u>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4조의6(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u>

	<u>영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5조의4(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³⁾

3)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⁴⁾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를 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교육·취업·의료 등에 있어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급식 지원이 보훈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저소득·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의 결식 위험과 영양 불균형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⁵⁾

□ 이에, 개정안은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 급식지원⁶⁾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급식지원 시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한 급식 최저 단가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참고로,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⁷⁾ 노인에 대한 급식지원은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5) 제22대국회 제427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7. 15.) p. 80.-81. 등.

6) 급식지원의 대상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급식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식지원 대상자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각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비추어 볼 때, 전체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급식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임.

7)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

「노인복지법」에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⁸⁾

□ 개정안은 급식지원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도모하고,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긍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급식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급식지원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급식지원의 기준이 되는 급식최저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지원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지역 간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현재, 국가보훈부는 보조사업, 민관협력 사업 등을 통하여 무료 급식, 도시락 배달 등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⁹⁾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노인 급식지원 및 아동 급식지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 1](p.25), [참고 2](p.27) 참조.

9)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상이군경복지관 무료급식’ 보조사업(국고보조금 7,500만원)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민간기관 협력을 통한 식사지원(연탄은행), 도시락 배달(민간 봉사단체) 등이 있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강원도 영월군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¹⁰⁾

□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재원의 한정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급식지원 정책을 수행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능력, 현재 시행 중인 다른 급식지원 정책과의 조정방안,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 등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의 재정 소요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능력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급식지원 사업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정 교부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훈대상자 급식지원 수행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재정부담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0)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급식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가 노인 급식지원과 동일하여 실효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보훈행사 참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급식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등) ②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급식 지원에 따른 관련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급식 지원대상은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보훈행사(신년참배, 3·1절, 현충일, 6·25전쟁일 등)에 참여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급식 및 이동 차량 지원

- 아동·노인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의 경우 2005년 지방 이양되어,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¹¹⁾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소요 재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아동 급식지원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 분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결식아동 급식’,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¹²⁾
-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급식지원의 기준과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해석례¹³⁾ 및 앞선 아동 급식지원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볼 때, 개정안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급식지원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11) 舊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지방이양 등의 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5. 주민의 복리 및 생활편의와 직접 관련된 권한 내지 사무는 시·군·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 100. 결식아동 급식

13) 법제처 09-0110 법령해석 사례(2009. 5. 22.) 참조.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그런데, 개정안은 전체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편적 급식지원을 실시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바, 국가보훈대상자 전체 인원(약 187만 명)과 유사 제도의 급식지원 단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정안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편적 급식지원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¹⁴⁾ 개정안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소요 재원에 대한 부담능력 등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정안은 급식지원의 최저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 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급식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임.

[표 1]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2025. 10월말 기준, 명)

대상구분	합계	본인	유가족		
			소계	수권유족	비수권유가족
합 계	1,868,984	270,901	1,598,083	289,469	1,308,614
독립유공자	91,883	4	91,879	9,033	82,846
국가유공자	1,621,217	158,911	1,462,306	275,636	1,186,670
보훈보상대상자	30,110	6,389	23,721	2,539	21,182
참전유공자	100,893	100,893	(참전유공자의 경우 유족 미등록)		
5·18민주유공자	16,965	3,390	13,575	1,115	12,460
특수임무유공자	7,916	1,314	6,602	1,146	5,456

자료: 국가보훈부

14) 2025년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의 기준 단가는 1식 9,500원 이상이고, 2024년 노인 급식지원 단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기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약 4,000원~6,000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음.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할 경우 연간 8조 1,906억원~19조 4,526억원(1일 3식, 365일 지원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인원에는 아동 급식 지원 대상과 노인 급식지원 대상이 중복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재정 소요는 이보다 낮은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와의 의견 수렴 및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개정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급식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여, 급식지원에 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편,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서는, “경로당 양곡구입비 및 부식 구입비 사업”과 같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¹⁵⁾ 또는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과 같이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만을 선별하여 급식을 지원하는 방안¹⁶⁾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약계층과 독거가구만을 지원대상으로 할 경우, 약 65,566명(65세 이상 제외 시 약 7,112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15)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제외한다)

16)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표 2] 아동 및 노인 급식지원 사업 지원대상

구분	노인 급식지원		결식 아동 급식지원
지원 대상	경로식당 무료급식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또는 65세) 이상 노인 - 결식 우려 저소득 55~59세(또는 ~ 64세 이하)의 자	■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 저소득 등 가정의 아동, 결식 발견·우려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긴급복지, 지역아동센터·복지관 이용대상 등
	거동불편 식사배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또는 65세) 이상 노인 - 결식 우려 저소득 55~59세(또는 ~ 64세 이하)의 자	

자료: 국가보훈부

[표 3]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약계층 등 현황

(2025. 10월말 기준, 명)

대상구분	합계	본인	유가족		
			소계	수권유족	비수권유가족
취약계층*	41,299 (36,936)	18,778 (18,028)	22,521 (18,908)	22,521 (18,908)	-
독거가구	24,337 (21,518)	9,448 (9,078)	14,889 (12,440)	14,889 (12,440)	-

*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팔호안은 해당 유형별 65세 이상을 의미함.

** 비수권유가족의 경우 관련 정보 미보유로 현황 파악이 어려움.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현재 시행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급식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2026년부터 보훈회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점심을 지원하는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시행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일정 부분 달성되는 측면이 있고, 향후 해당 사업이 확대될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른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이 동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에 따른 급식지원의 도입 필요성 및 지원 방법(전달체계)¹⁷⁾의

17) 급식가맹점·급식카드 제공, 특정 장소(학교·경로당) 급식지원, 도시락 배달 등.

내용 등을 논의하는데 있어, 동 사업의 진행 경과, 보훈대상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율 및 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은 보훈회관·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보훈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점심 식사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자부담 분(1천원)을 제외한 식대 단가(4천원)를 동 사업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 매칭(50:50)하여 지원할 예정임.

[표 4]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 개요

- (개요)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보훈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점심 식사 지원
 - 주2회(월 8회) 점심 1끼 지원
- (사업방식)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비, 지방비 매칭(50:50)
 - 복지지원 사업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 식대단가 5,000원 기준 국비 2,000원, 지방비 2,000원 지원(자부담 1,000원)
- (예산) 2026년 17억 8,900만원
 - 110개 지자체[시·구(80개) 단위 80명, 군(30개) 단위 40명], 연 729,600명 지원 예정

□ 셋째, 현재 시행 중인 다른 급식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중에는 아동·노인 급식지원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이 상당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는 이미 급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보훈대상자 결식 예방 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지원대상 등 구체적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5] 국가보훈대상자 연령별 현황

(2025년 10월말 기준, 명)

대상 구분	합계	연령별 현황			
		17세 이하	18세~59세	60세~64세	65세 이상
합계	1,868,984	17,259	755,303	219,686	876,736
독립유공자	91,883	69	30,788	12,251	48,775
국가유공자	1,621,217	15,000	694,671	200,806	710,740
보훈보상대상자	30,110	1,909	16,361	3,432	8,408
참전유공자	100,893	0	0	-	100,893
5·18민주유공자	16,965	38	9,295	2,210	5,422
특수임무유공자	7,916	243	4,188	987	2,498

* 음영은 아동 급식지원 영역을, 음영, 음영은 노인 급식지원 영역을 각 의미함.

자료: 국가보훈부

□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정책에 대한 수요와 관련하여,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¹⁸⁾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노인 급식지원, 식사 배달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은 2% 이하로 저조하게 나타난 반면,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생활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문화여가 지원 등 순으로 선택하였다는 점은, 보편적 급식지원 도입 필요성, 급식지원의 대상·방법(전달체계) 등을 논의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8) 국가보훈부 등록 보훈대상자 중 이중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한 10,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8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함.

[표 6]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결과(일부 발췌)

(단위: %)

<2024년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이용 여부>				
구분	있다		없다	
		(2021년)		(2021년)
노인급식지원	1.2	1.4	98.8	98.6
식사 배달 서비스	1.3	1.9	98.7	98.1
<현재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구분	생활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리모델링 등)	문화여가 지원 (나들이 등)	생활용품 지원 / 보청기 등 의료기기 지원
선택률	62.9	10.1	6.1	4.5

* 현재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응답은 상위 4위까지만 기재함.

자료: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결과」 p.323.-339.

□ 한편, 6건의 개정안 외에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도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급식지원을 신설하려는 경우, 6건의 개정안 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 급식지원의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동 법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보훈영역에 포함하여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¹⁹⁾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급식지원 신설에 동의하면서도, 기존 급식지원 제도와 관계, 지방재정 부담, 행정안전부 의견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급식지원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따른 급식지원을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²⁰⁾

문 의 처
02)6788-5112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등록대상 및 예우·지원의 대상을 참전유공자 본인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예우·지원 대상을 참전유공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 유족 등록 절차, 법 적용배제 대상 등 관련 조문들도 이에 맞추어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6년 3월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사망 시)에 대하여 생계지원금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21050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20) 행정안전부도 같은 취지의 의견임.

참고 1

노인 무료급식 사업 개요²¹⁾

○ (주관) 보건복지부 / (시행) 지자체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직접적 법령근거는 없으며 지자체별 재량시행)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원대상)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노인(60 또는 65세 이상)

- 저소득자, 거동불편 생계곤란자,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 (지원내용)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 자체 추진

- (지원방식) 경로당 등 시설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구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급식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또는 65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 저소득 55~59세(또는 ~64세)의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또는 65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 저소득 55~59세(또는 ~64세)의 자
급식기관	◦ 경로식당(일일평균이용자 수 20인 이상, 주 3회 이상 급식/지역여건 고려시 이용자 20인 이상 [읍·면지역 10인 이상], 주1회 이상 급식 가능)	◦ 밥, 국, 밑반찬, 죽 등 가정식·치료식(당뇨병, 고혈압) 등 제공
비용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무료, 그 외 실비	

21) 자료: 국가보훈부

○ (지원규모) 지원인원, 소요예산(지자체 부담) 확인되지 않음

- (지원단가) 4,000원 이상 (지자체별 상이)

[지자체별 노인 급식지원 단가]

구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울특별시	4,000~5,500	4,000~6,000
부산광역시	3,500~4,000	3,500~4,000
대구광역시	3,500	2,300~14,500
인천광역시	3,500	3,500
광주광역시	4,000	4,000
대전광역시	4,000	4,000
울산광역시	3,500	4,000~5,500
세종특별자치시	미운영	5,000
경기도	4,000	4,000~8,000
강원특별자치도	3,000~6,000	3,500~11,000
충청북도	3,500~5,000	2,500~9,500
충청남도	3,500~5,000	3,500~20,000
전북특별자치도	4,000~4,500	5,000~6,000
전라남도	5,500	5,500
경상북도	4,000	4,000
경상남도	3,300	2,500~15,000
제주특별자치도	5,500	5,500

* 도시락 단가는 지역별로 1일분 또는 3~5일분을 제공하거나 단백질 음료 등을 추가로 제공, 배달료 지원 등 구성이 다양하여 단가의 범위가 넓음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 2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개요²²⁾

○ (주관) 보건복지부 / (시행) 지자체, 교육청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국가와 지자체에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 부과
- '05년 지방이양으로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을 통해 급식단가 등 권고

○ (지원대상)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저소득자, 결식 발견·우려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긴급복지, 지역아동센터·복지관 이용대상 등

○ (지원내용) 지자체와 교육청 재원 분담·지원

- 지자체가 단체급식소(아동복지관 등), 도시락 배달, 급식바우처카드 등 아동에게 적합한 지원방법을 선택하여 지원

구 분	학기 중				방학중(연중)
	평일		토.공휴일		
	조.석식	중식	조.석식	중식	조.중.석식
기관명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 아동이 원하는 급식지원 유형(조·중·석식)을 선택하나, 평균 1일 1~2식 제공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자체가 제공

- (급식단가) 9,500원 이상 권장('25년 기준)

○ (지원인원) '24년 기준 272,400명

구분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24년	272,400	164,143(60.2%)	14,069(5.2%)	94,188(34.6%)
'23년	277,394	164,509(59.3%)	14,323(5.2%)	98,562(35.5%)
'22년	283,858	165,698(58.4%)	15,328(5.4%)	102,832(36.2%)

○ (소요예산) 지자체·교육청 분담(정부지원 없음), 소요예산은 확인되지 않음

* 지원인원으로 추정 시 1일 3식 기준 최대 2.8조원 소요

22)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 3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 개요²³⁾

□ 사업개요

-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보훈회관 복지지원을 경로당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 보훈회관,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보훈문화 프로그램에 참여시 참여자를 대상으로 점심 지원

□ 사업방식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훈문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사비 지원
 - * 연 인원 729천명 전망 (1회당 시,구 단위 80명, 군 단위 40명)
 - ** 지자체의 내실있는 프로그램 설계, 보훈대상자 참석 유도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지자체 지원 (110개 단체, 6백만원)
- (비용분담) 신청 지자체 매칭(50:50), 자부담 1천원* 적용
 - * 현재 보훈회관에서도 2~3천원 자부담 중

□ 예산소요 : +1,789백만원

- 年 3,578백만원 (국비 50% 1,789, 지방비 50% 1,789백만원)
 - (점심지원) 국비 점심 1회 2천원 × 年 729천명 = 1,459백만원
 - (프로그램) 국비 年 3백만원 × 110 = 330백만원

< 보훈회관 점심·여가 지원 상세내역 >

1. 식대단가 : 5천원 (자부담 1, 국비 2, 지방비 2)
2. 지원인원 : 110개 단체, 시·구 80개(日 80명)· 군 30개(日 40명)
3. 지원일수 : 행사일정 고려 주 2회·월 8회, 12개월
4. 프로그램 운영비 : 지자체 참여 유도 등을 고려 프로그램 운영비 6백만원

23) 자료: 국가보훈부

